



여수시 고시 제2025 - 156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신고)하고 고시합니다.

승인 (신고) 번호	실시계획 승인 (신고)수리	시 행 자		사업착수 예 정 일	사업준공 예 정 일	점용·사용 장 소	공사내용
		주 소	성 명				
2025-4 (2025. 2. 10.)	2025. 3. 18.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여수시장 (섬발전지원과)	실시계획 승인일	'25.12.31.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1864-6번지 일원	화산항 어촌뉴딜 300사업

2025. 3. 18.

여 수 시 장

[여수시 공고 제2025 - 950호]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

우리 시 관내 건설공사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여수시장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

## 2. 대상사업 내역

가. 사 업 명 :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75-2, 75-3, 76-4 건축물 해체공사

나. 사업주체 : 한국토지신탁주식회사

다. 시 공 자 : (주)승재산업개발

라. 감 리 자 : (주)종합건축사인건축사

마. 사업개요

1) 위 치 : 여수시 학동 75-2, 75-3, 76-4번지(3개동)

2) 해체내용

- 학동 75-2번지 :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 지상5층,  
1개동 / 연면적 6,824.29㎡

- 학동 75-3번지 : 근린생활시설 / 지상6층, 1개동 / 연면적 2,483.8㎡

- 학동 76-4번지 : 숙박시설, 위락시설 / 지상6층, 1개동 / 연면적 1,430.43㎡

※ 상기 해체내용은 지하층이 제외된 사항으로 지하층 철거여부에 따라 해체규모 및 면적이 변경 될 수 있음

3) 공사기간 : 2025. 3. ~ 2025. 6.

4) 순공사비 : 2,233,000,000원(VAT 포함)

5) 안전점검 비용 : 3,600,000원(VAT 별도)

마. 건축물 해체허가일 : 2022. 10. 6.

### 3. 안전점검 내용(과업내용)

#### 가. 점검종류

- 건축물 해체공사

#### 나. 점검시기 : 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1, 3 및 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여수시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등록명부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4-2210호

#### 나. 결정방법

1)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별표1]에 따른 사업수행 능력 및 제안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함.  
단 신청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함.

### 【최종평가】

평가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수행능력	10점	평점=평가점수 X 10%
수행가격	90점	
합 계	100점	

- 2)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함.
- 3)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 가격임.

#### 5. 응모신청서 제출일시 및 방법

- 가. 접수기간 : 2025. 3. 14.(금) ~ 2025. 3. 18.(화) 16:00까지
-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여수시 건축과 건축안전팀)
- 다.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서식1]
-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서식2]
-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서식3]

- 가격제안가 하한률 : 안전점검 비용의 87.745%

※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 4) 서약서 1부[서식4]

#### 6. 개찰일시 : 2025. 3. 19.(수) 이전 개별 통보(우선순위 1개 업체만 통보)

\* 우선순위 업체(1,2순위)의 점수가 동일 할 경우 2개 업체 통보

## 7. 사실확인 서류 제출기간(개별 통보 받은 업체에 한함.)

가. 제출기간 : 2025. 3. 20.(목) 09:00 ~ 16:00까지

나. 제출서류(사실확인 서류)

- 1)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각 1부.
- 2) 안전점검 수행실적 각 1부.(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적과 기존건축물 안전점검 실적을 구분하여 제출)
-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 4)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 1부.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 제출.

※ 사실 확인 서류는 [별첨 1]의 양식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본 1부를 아래 내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1) 좌측제본(크기 A4), 견출지로 항목 구분 (2) 색상 : 표지 백색, 간지 색지

## 8.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5. 3. 20.(목) 09:00~ 16:00까지

나. 열람방법 : 여수시청 건축과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함.)

다. 이의신청 방법 :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 마.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 점 처리합니다.
-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건축과(☎061-659-32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서식 1부. 끝.

[서식1]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신청 사업명		
직무분야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 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li> <li>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li> <li>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3]</li> <li>4. 서약서 1부 [서식4]</li> </ol>	수수료  없음
----------------------	---	---------------

[서식2]

##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자기평가서

1.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배점범위	세부기준 및 배점		비고
1. 참여 기술인	50	소 계	50	
		· 특급기술자: 7점 × 인원		
		· 고급기술자: 5점 × 인원		
		· 중급기술자: 3점 × 인원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5년간)	40	소 계	40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2점 × 개소		
		· 건축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1점 × 개소		
3. 점검·진단 평가결과	5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경우 0점 처리	5	
4.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 A- 이상	5	
		· BBB- 이상	4	
		· BB- 이상	3	
		· B- 이상	2	
		· CCC+ 이하	1	
		· 미제출	0	
<b>총 계</b>	<b>100</b>	<b>평점 : 평가점수 × 10%</b>		

1.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직무분야 건축, 토목 및 안전관리에 한함**(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2. 수행가격

평가항목	세부기준 및 배점			비고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제안가격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70	80	90	
	· 예정가격 2번째 근접	65	75	85	
	· 예정가격 3번째 근접	60	70	80	
	· 예정가격 4번째 근접	55	65	75	
	· 예정가격 5번째 근접	50	60	70	
	· 예정가격 6번째 근접	45	55	65	
	· 예정가격 7번째 근접	40	50	60	
	· 예정가격 8번째 근접	35	45	55	
	· 예정가격 9번째 근접	30	40	50	
	· 예정가격 10번째 근접	25	35	45	
	· 예정가격 11번째 근접	20	30	40	
	· 예정가격 12번째 근접	15	25	35	
	· 예정가격 13번째 이하	10	20	30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2.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참여업체 수 3개소 이하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 참여업체 수 4개소 이상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3.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4.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최종평가】**

평가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수행능력	10점	평점=평가점수 X 10%
수행가격	90점	
합 계	100점	

[서식3]

##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가격내용	사업명			
	제안가격	금	원정(₩	원정) ※부가세별도
신청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제안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소하천 지정, 구역, 예정지 변경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열람공고(중방천)

중방 소하천 지정, 구역, 예정지 변경(안)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3조제4항, 제3조의3제3항, 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18일

여 수 시 장

1. 소하천 지정 변경 조서

수계(水系)명	소하천명	소하천 구간		소하천의 총길이(m)	지정 [변경] 사유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기타 (남해바다)	(기존) 중방천	여수시 주삼동 726-2	여수시 월하동 200-137	4,853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이일산업) 구간 내 소하천 선형변경사항 반영
	(변경) 중방천	여수시 주삼동 726-2	여수시 월하동 200-137	4,836 (감 17)	

2. 소하천 구역 변경 조서

수계(水系)명	소하천명	소하천 구역		
		지번 및 지목	면적(㎡)	결정(변경·폐지) 사유
기타 (남해바다)	(기존) 중방천	여수시 월하동 200-148 등 16개 필지 (천,구,답)	91,427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이일산업) 구간 내 소하천 선형변경사항 반영
	(변경) 중방천	여수시 월하동 200-148 등 24개 필지 (천,구,도,공)	91,243.7 (감 183.3)	

3. 소하천 예정지 변경 조서

수계(水系)명	소하천명	소하천 예정지		
		지번 및 지목	면적(㎡)	결정(변경·폐지) 사유
기타 (남해바다)	(기존) 중방천	여수시 주삼동 592-4등	24,565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이일산업) 구간 내 소하천 선형변경사항 반영
	(변경) 중방천	여수시 주삼동 592-4등 116개 필지 (제,장,도,공,답,구)	16,472.1 (감 8,092.9)	

4. 열람의 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25. 3. 18. ~ 3. 31.(14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제출

다. 제출기한 : 공고기간 내

라. 게시공고 : 여수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마. 열람장소 : 여수시청 건설과 하천팀

바. 관련도면 : 게재 생략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건설과(☎061-659-4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발전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 (태양광발전)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7일

### 여 수 시 장

○ 전기사업(태양광) 양수인가 수리 내역

연번	구분	대표자	허가번호	발전소명	발전소 위치	용량 (kW)	비고 (상호변경 등)
1	양도인	(주)대아전력 이동길	여수 570	그린테크산업 태양광발전소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282 건물위	59.76	대아전력 태양광발전소 → 그린테크산업 태양광발전소
	양수인	(주)그린테크산업 대표이사 서중섭					

끝.

## 빈집 직권 철거 결정 공시송달 공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하고자 하나 건축물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연락 불가능함으로 철거 결정 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7일

### 여 수 시 장

1. 공고내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른 빈집 직권 철거 결정 통지
2. 공고기간 : 2025. 3. 17. ~ 2025. 3. 31. (14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여수시청 누리집
4. 법적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5. 공시송달(공고) 대상

연번	위 치	소유자	용 도	심의결과	비 고
1	전라남도 여수시 교동 52번지 (충무오거리안길 15-2)	박*배	단독주택	철거	직권철거

6. 기타사항

- 상기 대상물(빈집)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철거조치를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하여 직권으로 철거 실시 (2025년 5월)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여수시장은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빈집 소유자는 보상비 산정을 위하여 직권 철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감정평가법인 등 1인을 추천해야 합니다.
7.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청 건축과(☎061-659-40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여수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위원명단 공개) 규정에 따라 여수시에너지위원회 위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8일

여 수 시 장

## 여수시 에너지위원회 위원 명단 공고

1. 공고기간 : 2025. 3. 18. ~ 4. 1.(15일간)
2.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3. 구성인원 : 15명(당연직 3, 위촉직 12)
4. 위원임기
  - 당연직 : 해당직위 재임기간
  - 위촉직 : 2025. 3. 17. ~ 2027. 3. 16.
5. 위원회 기능 : 에너지 계획 및 에너지 시책 등의 자문·심의·조정
  -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 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 에너지 절약 활성화와 관련 민·관 협력 사항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 그 밖에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 6. 위원명단

연번	구분	직위	성명	성별	임기	비고
1	당연직	위원장	최정기	남	해당직위 재임기간	여수시 부시장
2	"	위원	이동일	남	"	여수시 기획경제국장
3	"	위원	손용봉	남	"	여수시 신산업에너지과장
4	위촉직	위원	구민호	남	2025. 3. 17. ~ 2027. 3. 16.	여수시의회 의원
5	"	위원	김선채	남	"	연임
6	"	위원	김응상	남	"	"
7	"	위원	정 문	남	"	공개모집
8	"	위원	배영철	남	"	"
9	"	위원	정비취	여	"	"
10	"	위원	김은숙	여	"	"
11	"	위원	박형민	남	"	"
12	"	위원	김장환	남	"	"
13	"	위원	최준열	남	"	"
14	"	위원	김강순	여	"	"
15	"	위원	최선민	남	"	"

※ 기타 사항은 여수시 신산업에너지과(☎061-659-2132)로 문의 바랍니다.

## 보상계획 열람 공고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여천동주민센터 주차장 증설공사」 매입 대상지의 토지(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손실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붙임의 토지 등 내역서를 열람하신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 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3. 17.

여 수 시 장 (인)

### 1. 사업개요

- 사업명 : 여천동주민센터 주차장 증설공사
- 위치 : 여수시 선원동 695-6번지, 695-8번지
- 사업기간 : 2025. 1. ~ 2025. 12.
- 사업시행자 : 여수시장

2. 열람공고기간 : 2025. 3. 17. ~ 3. 31. (14일간)

3. 열람방법 : 토지 및 물건조서는 시·군·구보 및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http://www.yeosu.go.kr))에 게재하고, 여수시 회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4. 보상시기 : 추후 감정평가 후 개별 통지

### 5.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은 현금보상이며, 보상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보상금을 계좌 입금합니다.
- 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동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 시·도지사 및 소유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 2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6. 기 타

-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하나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협의를 절차 및 방법 등) 규정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열람결과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회계과 (☎061-659-3229)로 문의바랍니다

## 편입 토지조사서

[사업명 : 여천동주민센터 주차장 증설 공사]

작성자 : 최민정 (인)

연번	토지소재지			지적	편입 (분할 후)		지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동	리	지번		지번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계													
1	선원동		695-6	489			전	황*순	전라남도 여수시 선원동 ***				
2	선원동		695-8	314			전	황*윤	전라남도 순천시 매산길 **, ***동 ****호				

## 편입 물건조서

[사업명 : 여천동주민센터 주차장 증설 공사]

작성자 : 최민정 (인)

연 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관리내용	비고
	읍면동	리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선원동		695-6	분묘		2	식	황*순	여수시 선원동 ***				
				영농작물		1	식						시금치
2	선원동		695-8	분묘		1	식	황*윤	전라남도 순천시 매산길 **, ***동 ****호				

## 공 시 송 달 공 고

「행정절차법」제21조,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5. 3. 18.

## 여 수 시 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
2.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건축주 (행위자)	위반건물 소재지	처분원인 (위반내용)	처분내용	반송주소	반송사유
1	안○중	둔덕동 475-61	위반건축물 (무단용도변경)	시정명령	전라남도 여수시 쌍봉로 3**, 1**동, 1**호 (둔덕동)	폐문부재

4. 공고기간 :2025. 3. 18. ~ 2025. 4. 2.(15일간)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건축과(☎061-659-40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여수시 사무관리조정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을 이에 발령한다.

2025년 3월 11일

여수시장

정기명



여수시 훈령 제42호

붙임 여수시 사무관리조정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령 1부.

여수시 훈령 제 421호

## 여수시 사무관리조정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령

여수시 사무관리조정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여수시 사무관리조정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서 간 소관 지정이 불분명한 사무, 신규사무 및 다툼·갈등이 있는 사무(이하 “분쟁사무 등”이라 한다)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부서 간 또는 부서장 간 상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의견을 달리하여 다툼(이하 “분쟁”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는 적용을 제외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관련한 사항
2. 조례·규칙 신설에 관한 사항
3.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분장사무에 명시된 사항
4. 단일 사무의 일부를 분리하여 조정 요청하는 사항
5. 같은 국·소·단 내 소관 이견이 있는 사항
6. 그 밖에 사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3조(사무관리 운영)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관 부서를 지정하여 사무를 관리 운영한다.

1. 불분명한 사무 등의 주관부서는 원칙적으로 시의 기구 기능 위주로 관장한다.
2. 신규사무는 상부 기관 등의 계선조직을 감안하여 이와 연계되는 부서로 한다.

3. 2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무는 그 관련성의 정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부서를 주관부서로 하며 주관부서 이외의 관련부서는 협조부서로서 주관부서를 협조·지원해야 한다.

4. 주관부서는 업무추진을 위해 그 업무와 관련되는 협조부서에 필요한 자료·지원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조부서는 주관부서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4조(사무조정위원회 설치) ① 주관부서를 조정·결정할 수 없는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조정위원회를 별도 설치하지 않고 시정조정위원회개최로 심의·결정한다.

제5조(사무조정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사무처리를 하기 위한 사무지정은 1차적으로 관·과·소장(5급)이 한다.

② 부서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분쟁이 예상될 경우 또는 이미 분쟁이 발생된 경우에 관련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은 때에는 같은 국·소·단 내 부서 간 다툼은 소관 국소단장(4급)이 조정하며, 소관 국이 다른 경우의 다툼은 사무조정건의서를 작성하여 총무과에 사무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③ 사무조정 요청부서는 다음 사항을 사무조정 의견서(별지서식)에 작성하여 총무과에 제출한다.

1. 해당사무명
2. 부서 결론
3. 사무 요지

4. 관련법령 등 검토 결과

5. 타 기관 운영 실태

6. 관·과·소장 종합의견(기능 측면, 주민편의 측면, 관련 법규와의 연계성 등)

7. 기타 참고 사항

④ 총무과장은 사무조정 의견서가 들어오면 소관 국이 다른 다툼이 있는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사무조정(안)을 작성하고 행정안전국장은 다툼이 있는 부서 간 사무를 조정한다.

제6조(사무심의 결정) ① 제5조제4항에 따른 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며 절차는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따른다. 다만, 빠른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는 부서장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인사적용) 제6조에 따른 사무심의 결정으로 조정된 사무조정 건에 대해서는 인사 시(근무평정 및 보직변경 시) 참고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조정 결정사항 이행 등) ①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따라 조정 결정을 한 때에는 총무과장은 이를 서면으로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부서장은 그 조정 결정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 결정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문책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주관부서는 이에 대한 관련 규칙과 사무전결처리규칙 반영 사항이 있는 경우 총무과로 송부한다.

[붙임 서식]

## 사무조정(이관)검토 의견서

확인관: 과장 (인)

대 상 사 무		
부 서 결 론		
사 무 요 지		
관련법령 등 검 토 결 과		
관 련 부 서		
타 기 관 운 영 실 태	도단위이상	
	인근 시·군 타 시·군	
부 서 장 중 합 의 견	1. 법적 측면[상위법 등]  2. 기구 기능(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측면  3. 효율성·효과성 측면(주민 편의, 업무 체계도 등)	
기 타 참 고 사 항		